

가천융합연구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부설 가천융합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센터는 가천대학교 가천융합연구센터(이하 '연구센터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센터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제 2 장 사 업

제4조(연구센터의 목적) 본 연구센터는 경영학·사회과학·인문학·공학·의학·약학 등 각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관련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) 본 연구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술연구 : 본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로서 개별, 공동연구 수행
2. 용역사업 : 제5조 제1항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용역
3. 관련학문 분야의 논문집,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 발간
4. 국내외 학술교류, 공동연구 및 연구발표회 개최
5.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3 장 조 직

제6조(구성)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센터장)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, 본 대학교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조교) ①본 연구센터에는 조교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조교는 대학원생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
제 4 장 연구위원 및 연구교수, 연구원

제9조(연구위원) ①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한다.

제10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) ①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교수,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1. 본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연구교수 및 책임연구원
2. 외부인사 중 본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연구에 참여하는 특별연구원
3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연구센터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연구원
4. 학사과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 연구센터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보조원

② 연구교수, 책임연구원, 특별연구원, 일반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보수 등 제반 경비는 외부지원금과 교내지원 및 연구센터 재정으로 충당한다.

③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5 장 위원회

제11조(위원회 설치) 본 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편집위원회

제12조(운영위원회) ①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다.

②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센터의 운영계획
2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3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
4. 연구센터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
5.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편집위원회) ①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센터 기관지 『융합정책연구』 간행을 위한 기획, 심사, 발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며,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조직한다.

②편집위원은 교내외 및 국제학계의 융합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편집위원회에 대한 기타 사항은 「융합정책연구간행규정」 및 「가천융합정책연구센터편집위원회규정」에 따른다.

제 6 장 재 정

제14조(경비)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고 보조금
2. 교내외 학술연구비 지원금
3. 연구용역비
4. 기타 수익금

제15조(회계년도) 본 연구센터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6조(예·결산의 승인)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(운영세칙) 본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.